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재난 대비·대응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주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정원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30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를 “제7조제3항제32호부터 제37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를 “제7조제3항제38호부터 제45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제8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제18조제3항 및 제8항 중 “방재안전연구관”을 각각 “안전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을 “시설연구관·안전연구관”으로,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를 “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9항 중 “방재안전연구관”을 각각 “안전연구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방재안전연구관”을 “안전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교통재난대응과·보건의료재난대응과·가축질병재난대응과 및 환경재난대응과”를 “국토산업재난대응과·보건사회재난대응과

·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로, “방재안전연구관”을 “안전연구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8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사회재난 대비·대응 관련 제도개선 및 운영
3.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4. 사회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5.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및 배포
6. 재난연감의 발간 및 관리
7. 재난 분야 위기징후 감시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
8.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협의
9.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0. 국가핵심기반 합동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나목, 다목, 마목, 아목 및 어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우주항공청 및 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이하 “금융위주관재난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14. 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운영
15. 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16. 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17. 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18. 금융위주관재난등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9. 금융위주관재난등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금융위주관재난등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1. 금융위주관재난등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2. 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23. 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4. 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5. 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26.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을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을 “국토산업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을 “국토산업재난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을 각각 “국토산업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분야”를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분야”를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 분야”를 각각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을 “국토산업재난”으로,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을 “국토산업재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자목, 타목, 너목, 더목 및 버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이하 “국토산업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12. 국토산업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국토산업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제19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재난대응과장”을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염병등 재난”을 “보건사회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염병등 재난”을 “보건사회재난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감염병등 재난”을 각각 “보건사회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감염병등 재난 분야”를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감염병등 재난 분야”를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감염병등 재난 분야”를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운영기준”을 “운영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감염병등 재난 분야”를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감염병등 재난”을 “보건사회재난”으로,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감염병등 재난”을 “보건사회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가목, 사목, 차목, 과목, 하목 및 서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질병관리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이하 “보건사회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12. 보건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보건사회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제19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질병등재난대응과장”을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축질병등재난”을 “농축산해양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축질병등재난”을 “농축산해양재난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가축질병등재난”을 각각 “농축산해양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가축질병등재난 분야”를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가축질병등재난 분야”를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가축질병등재난 분야”를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운영기준”을 “운영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가축질병등재난 분야”를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가축질병등재난”을 “농축산해양재난”으로,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가축질병등재난”을 “농축산해양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라목, 카목, 러목 및 머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이하 “농축산해양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12.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제19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재난대응과장”을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을 “환경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을 “환경산림재난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을 각각 “환경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를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를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를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운영기준”을 “운영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를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을 “환경산림재난”으로,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을 “환경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바목, 거목[2]는 제외한다], 저목, 처목 및 커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이하 “환경산림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12. 환경산림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환경산림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제19조의3제2항 중 “방재안전연구관”을 “안전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의2제2항 중 “기록관리과·기록서비스과 및 보존복원과”를 “지정 기록관리과·기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로, “기록관리과장·기록서비스과장 및 보존복원과장”을 “지정기록관리과장·기록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관 내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41조의2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관리 및 운영

5.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보안·재난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

10. 관 내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업무 총괄

제4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관리과장”을 “지정기록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6.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해제 이후 최초 공개재분류

제4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정책의 기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서고 배치, 반출·반입, 대여 관리, 보존시설 및 보존환경 유지·관리
3. 대통령기록물의 탈산·소독 등 보존처리
4. 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록·전자화 계획 수립·시행
5. 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상태검사 및 복원·복제
6. 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7.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8. 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
9.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관리, 복원·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
10.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해제 이후 최초 공개재분류는 제외한다)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11.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12.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13. 대통령기록물의 보안·재난 관리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2.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
4. 대통령기록 포털시스템의 관리·운영
5.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6.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총괄
· 지원
7.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서실 관리·운영
10. 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 및 수집·등록
11. 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등록
1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
13. 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개발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재난대응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국토산업재난대응과, 보건사회재난대응과,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
- 별표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를 삭제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3”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수의사무관·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를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6 다음에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1”을 신설하고,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1 다음에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2”를 신설하며,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1”를 삭제하고,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를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을 “2”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를 삭제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3”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수의사무관·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를 삭제하며, 운전서기보 5 다음에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1”를 신설하고,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

연구관 1 다음에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2”를 신설하며,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1”를 삭제하고,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를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을 “2”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지방행정국 새마을발전협력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통신망과	6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2025년 9월 30일까지
3)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2명 (4급 1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4)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	4명 (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제31호-----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7조제3항제32호부터 제37호-----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7조제3항제38호부터 제45호-----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⑦ -----

1. ~ 8의2. (생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설>	8의3.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1.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2. ~ 19. (생략)	12. ~ 19. (현행과 같음)
⑨ ~ ⑬ (생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② (생략)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안전사업조정과·재난안전산업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안전연구관-----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와·안전개선과·재난안전점검과 및 안전문화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	⑧ -----

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 시설연구원 또는 <u>방재안전연구</u> <u>관</u> 으로 보한다.	----- ----- <u>안전연구관</u> ----- -----.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 재난안전정보센터에 재난정 보통신과·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 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 연구원· <u>시설연구원·방재안전</u> <u>연구관</u>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 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공업연구원· <u>시설연구원</u> 또는 <u>방재안전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⑬ ----- ----- ----- ----- ----- ----- ----- <u>시설연구원·안전연구</u> <u>관</u> ----- ----- ----- ----- <u>시설연구원</u> 또는 <u>안전연구관</u> 으로 -----.
⑭ ~ ⑯ (생 략)	⑭ ~ ⑯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연재난실) ①·② (생 략)	제19조(자연재난실)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 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재난 자원관리과·재난경감과 및 재 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 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공업연구원·시설연 구관· <u>방재안전연구관</u> 또는 수	③ ----- ----- ----- ----- ----- ----- ----- <u>안전연구관</u> -----

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 총괄과·자연재난대응과·기후 재난대응과·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 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시 설연구원· <u>방재안전연구관</u> 또 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⑨ ----- ----- ----- ----- ----- ----- <u>안전연구관</u> ----- -----.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② (생 략)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 정책과·재난안전조사과 및 재 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 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시 설연구원 또는 <u>방재안전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③ ----- ----- ----- ----- ----- ----- <u>안전연구관</u>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 대응총괄과·산업교통재난대응 과·보건의료재난대응과·가축 질병재난대응과 및 환경재난대 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	⑦ ----- ----- <u>국토산업재난대응</u> <u>과·보건사회재난대응과·농축</u> <u>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u> <u>재난대응과</u> -----

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 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 로 보한다.	----- ----- <u>안전</u> ----- <u>연구관</u> ----- -----.	리·활용	9.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 리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9. 재난연감의 발간 및 관리	리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1. 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 괄·조정	10.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	10. 국가핵심기반 합동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 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총괄	2. 사회재난 대비·대응 관련 제도개선 및 운영	11. 민간 다중이용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 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 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11.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관련 원인·상황분 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총괄	3.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2.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 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2.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
4. 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4. 사회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 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3.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 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실태 점검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 항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나 목, 다목, 마목, 아목 및 어목 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 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획 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우주항공청 및 경찰청 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 재난 유형(이하 “금융위주관 재난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 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5.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 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령·제도 정비	5.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및 배 포	14.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 치(GPS) 전파혼신 재난, 법무 시설 재난 및 사고, 정부중요 시설 사고,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문화유산 관련 사고, 접 경지역 사고, 인공우주물체·	14. 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지 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
6. 사회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 항 총괄	6. 재난연감의 발간 및 관리		
7. 사회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7. 재난 분야 위기징후 감시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		
8. 사회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	8.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 에 관한 협의		

<u>위성 등의 추락·충돌, 테러</u> <u>(이하 “정보통신 사고등 재난”</u> <u>이라 한다)에 대한 협업 기</u> <u>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u> <u>사항</u> 15. <u>정보통신 사고등 재난 분야</u> <u>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u> <u>승인에 관한 사항</u> 16. <u>정보통신 사고등 재난 분야</u> <u>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u> <u>항</u> 17. <u>정보통신 사고등 재난 분야</u> <u>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u> <u>관한 사항</u> 18. <u>정보통신 사고등 재난 분야</u> <u>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u> <u>및 보급에 관한 사항</u> 19. <u>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u> <u>에 관한 협의</u> 20. <u>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u> <u>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u> 21. <u>국가핵심기반 합동평가단의</u> <u>운영 및 국가핵심기반의 관리</u> <u>주체에 대한 평가</u> 22. <u>재난 분야 위기징후 감시에</u> <u>관한 제도 운영</u>	<u>계 구축·운영</u> 15. <u>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관</u> <u>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u> <u>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u> 16. <u>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관</u> <u>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운</u> <u>영</u> 17. <u>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전</u> <u>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u> 18. <u>금융위주관재난등 분야 위</u> <u>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u> <u>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u> 19. <u>금융위주관재난등 분야 위</u> <u>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u> <u>관한 사항</u> 20. <u>금융위주관재난등 분야 위</u> <u>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u> <u>영 기준에 관한 사항</u> 21. <u>금융위주관재난등 분야 위</u> <u>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u> <u>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22. <u>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중</u> <u>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u> <u>영</u> 23. <u>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원</u> <u>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u>	<u>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u> <u>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u> ⑨ <u>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은 다</u> <u>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다중 밀집시설 화재, 해양 선</u> <u>박 사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u> <u>사고, 내수면 유도선 사고, 저</u> <u>수지 사고, 가스 수급 및 누출</u> <u>사고, 원유수급 사고, 전력 사</u> <u>고, 댐 사고, 사업장 인적사고,</u> <u>고속철도 사고, 도로터널 사</u> <u>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지하</u> <u>철 사고, 항공기 사고, 항공운</u> <u>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u> <u>애, 해양 유도선 등의 수난사</u> <u>고(이하 “다중 밀집시설 화재</u> <u>등 재난”이라 한다)와 다중 밀</u> <u>집시설 화재등 재난과 유사한</u> <u>재난 및 사고관련 대응 활동</u> <u>계획 수립 및 대응</u>	<u>한 회의의 운영</u> 24. <u>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재</u> <u>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u> <u>한 사항</u> 25. <u>금융위주관재난등 관련 기</u> <u>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u> 26. <u>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u> <u>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u> ⑨ <u>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u> <u>-----.</u> 1.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u>시행령</u>」 <u>별표 1의3 제2호자</u> <u>목, 타목, 너목, 더목 및 버목</u> <u>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u> <u>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u> <u>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u> <u>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u> <u>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이 재난</u> <u>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u> <u>형(이하 “국토산업재난”이라</u> <u>한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u> <u>수립 및 대응</u>
---	--	--	--

2.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운영	2. <u>국토산업재난</u> ----- -----
3.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u>국토산업재난 관련</u> ----- -----
4.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4. <u>국토산업재난</u> ----- -----
5.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5. <u>국토산업재난</u> ----- -----
6.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 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u>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u> ----- -----
7.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 한 사항	7. <u>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대응</u> ----- -----
8.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8. <u>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u> ----- -----
9.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u>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u> ----- -----
10.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 <u>국토산업재난</u> ----- -----

<u>운영</u>	<u>구성·운영</u>
11. <u>다중 밀집시설 화재등 재난</u>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 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11. <u>국토산업재난</u> ----- -----
<신 설>	12. <u>국토산업재난 관련 재난사 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 항</u>
<신 설>	13. <u>국토산업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u>
⑩ <u>보건의료재난대응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⑩ <u>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u> ----- -----.
1. <u>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지역축제·학교 및 학교시설 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감염 병등 재난”이라 한다)와 감염 병등 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u>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가 목, 사목, 차목, 파목, 하목 및 서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 행정안전 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부, 여성가족부 및 질병관리청 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 재난 유형(이하 “보건사회재 난”이라 한다)에 대한 대응 활 동계획 수립 및 대응
2. <u>감염병등 재난 관련 지방자 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 축·운영</u>	2. <u>보건사회재난</u> ----- -----

3. <u>감염병등 재난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u>	3. <u>보건사회재난 관련</u> ----- -----
4. <u>감염병등 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u>	4. <u>보건사회재난</u> ----- -----
5. <u>감염병등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u>	5. <u>보건사회재난</u> ----- -----
6. <u>감염병등 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u>	6. <u>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u> ----- -----
7. <u>감염병등 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u>	7. <u>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대응</u> ----- -----
8. <u>감염병등 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u>	8. <u>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u> ----- ----- 운영 기준 ----- --
9. <u>감염병등 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9. <u>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u> ----- -----
10. <u>감염병등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u>	10. <u>보건사회재난</u> ----- ----- 구성·운영 -----
11. <u>감염병등 재난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u>	11. <u>보건사회재난</u> ----- -----
<신 설>	12. <u>보건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u>

<신 설>	13. <u>보건사회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u>
⑪ <u>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⑪ <u>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u> ----- -----.
1. <u>가축질병·식용수 사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가축질병등재난”이라 한다)와 가축질병등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 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u>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라목, 카목, 러목 및 머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이하 “농축산해양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대응 활동 계획 수립 및 대응
2. <u>가축질병등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운영</u>	2. <u>농축산해양재난</u> ----- -----
3. <u>가축질병등재난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u>	3. <u>농축산해양재난 관련</u> ----- -----
4. <u>가축질병등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u>	4. <u>농축산해양재난</u> ----- -----
5. <u>가축질병등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u>	5. <u>농축산해양재난</u> ----- -----
6. <u>가축질병등재난 분야 표준매</u>	6. <u>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u>

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리 ----- -----
7. <u>가축질병등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u>	7. <u>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대응 -----</u>
8. <u>가축질병등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u>	8. <u>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 운영 기준-----</u> --
9. <u>가축질병등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9. <u>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u> -----
10. <u>가축질병등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u>	10. <u>농축산해양재난 ----- 구성·운영</u> -----
11. <u>가축질병등재난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u>	11. <u>농축산해양재난 -----</u> -----
<신 설>	12. <u>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u>
<신 설>	13. <u>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u>
⑫ <u>환경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⑫ <u>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u> -----.
1.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산불, 수질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원자력안전 사고, 공동구(共同</u>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바목, 거목[2)는 제외한다], 저목, 처목 및 커목에 따른 사회재

<u>溝) 재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험물 사고(이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이라 한다)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 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u>	<u>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이하 “환경산림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u>
2.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 협업체계 구축·운영</u>	2. <u>환경산림재난 -----</u> -----
3.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u>	3. <u>환경산림재난 관련 -----</u> -----
4.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u>	4. <u>환경산림재난 -----</u> -----
5.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u>	5. <u>환경산림재난 -----</u> -----
6.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u>	6. <u>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u> -----
7.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 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u>	7. <u>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대응 -----</u> -----

에 관한 사항	-----	장 및 수습관리과장은 부이사관	-----
8.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u>	8. <u>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u>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	-----
<u>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u>	-----	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 <u>방재안</u>	----- <u>안전연</u>
<u>운영기준에 관한 사항</u>	<u>운영 기준</u> -----	<u>전연구관</u>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u>구관</u> -----
9.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u>	9. <u>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u>	보한다.	-----.
<u>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u>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u>	-----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⑥ -----
<u>항</u>	--	분장한다.	-----.
10.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u>	10. <u>환경산림재난</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재난</u>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	-----	2. <u>중앙 · 지역사고수습본부 운</u>	2. <u>중앙 · 지역사고수습본부의</u>
<u>본부 운영</u>	-- <u>구성 · 운영</u>	<u>영 표준안 마련 및 기술 · 지</u>	<u>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 ·</u>
11. <u>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등</u>	11. <u>환경산림재난</u> -----	<u>원에 관한 사항</u>	<u>지원에 관한 사항</u>
<u>재난</u> 관련 원인 · 상황분석 등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u>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u>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u>환경산림재난 관련 재난사</u>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생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현
	<u>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u>	략)	행과 같음)
	<u>항</u>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	② -----
<u><신 설></u>	13. <u>환경산림재난 관련 기록의</u>	· 생산지원과 · <u>기록관리과 · 기</u>	----- <u>지정기록관리과 · 기</u>
	<u>보존 및 관리 · 활용</u>	<u>록서비스과 및 보존복원과</u> 를 두	<u>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u> ----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 ·	-----
(생 략)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학예	-----
②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	② -----	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	-----
과 · 재난구호와 · 재난보험과 ·	-----	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	-----
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를 두	-----	지원과장 · <u>기록관리과장 · 기록</u>	----- <u>지정기록관리과장 · 기록</u>
며, 복구지원과장 · 재난구호와	-----	<u>서비스과장 및 보존복원과</u> 장은	<u>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u> --
장 · 재난보험과장 · 수습지원과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학예	-----

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관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u>	6. <u>관 내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u>
7. ~ 16. (생략)	7. ~ 16. (현행과 같음)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 및 수집·등록</u>	4. <u>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관리 및 운영</u>
5. <u>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등록</u>	5. <u>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보안·재난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u>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u>관 내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업무 총괄</u>
⑤ <u>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⑤ <u>지정기록관리과장</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u>	6. <u>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해제 이후 최초 공개</u>

	<u>재분류</u>
7. <u>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개발</u>	<삭제>
8. <u>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u>	<삭제>
9. <u>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u>	<삭제>
10. <u>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u>	<삭제>
⑥ <u>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⑥ <u>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u>	1. <u>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정책의 기획·시행</u>
2. <u>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u>	2. <u>대통령기록물의 서고 배치, 반출·반입, 대여 관리, 보존시설 및 보존환경 유지·관리</u>
3. <u>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u>	3. <u>대통령기록물의 탈산·소독 등 보존처리</u>
4. <u>대통령기록 포털시스템의 관리·운영</u>	4. <u>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록·전자화 계획 수립·시행</u>
5. <u>국내외 학술행사 개최</u>	5. <u>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상태검사 및 복원·복제</u>
6. <u>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u>	6. <u>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u>

<u>협력 총괄·지원</u>	<u>급복구 및 복원 지원</u>
<u>7.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u>	<u>7.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u>
<u>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u>	<u>8. 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u>
<u>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서관 관리·운영</u>	<u>9.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관리, 복원·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u>
	<u>10.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해제 이후 최초 공개재분류는 제외한다)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u>
	<u>11.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u>
	<u>12.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u>
<u>⑦ 보존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3. 대통령기록물의 보안·재난 관리</u>
<u>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정책의 기획·시행</u>	<u>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2. 대통령기록물의 서고 배치,</u>	<u>1.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u>

<u>반출·반입, 대여 관리, 보존시설 및 보존환경 유지·관리</u>	<u>2.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u>
<u>3. 대통령기록물의 탈산·소독 등 보존처리</u>	<u>3.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u>
<u>4. 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목·전자화 계획 수립·시행</u>	<u>4. 대통령기록 포털시스템의 관리·운영</u>
<u>5. 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상태검사 및 복원·복제</u>	<u>5.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u>
<u>6.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관리·운영</u>	<u>6.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총괄·지원</u>
<u>7. 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u>	<u>7.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u>
<u>8. 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u>	<u>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u>
<u>9.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u>	<u>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서관 관리·운영</u>
<u>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관리, 복원·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u>	<u>10. 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 및 수집·등록</u>
<u>11. 대통령기록물 보안·재난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u>	<u>11. 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등록</u>
<u>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u>	<u>1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u>
	<u>13. 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개발</u>
<u>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u>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u>사회재난대응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산업교통재난대응과, 보건의료재난대응과, 가축질병재난대응과 및 환경재난대응과</u> 6. (생략)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사회재난대응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국토산업재난대응과, 보건사회재난대응과,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업재난대응과</u> 6.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안전연구 관 또는 수석전문관</u>	· · <u><신 설></u>	· · <u>3</u>	+3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 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u>	<u>3</u>	<u><삭 제></u>	-3
· ·	· ·	·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u>	<u><신 설></u>	<u>3</u>	+3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u>	<u>3</u>	<u><삭 제></u>	-3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신 설>	<u>2</u>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u>2</u>	<삭 제>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 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신 설>	<u>2</u>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 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u>2</u>	<삭 제>	-2
·	·	·	
·	·	·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신 설>	<u>1</u>	+1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신 설>	<u>2</u>	+2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u>1</u>	<삭 제>	-1
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u>2</u>	<삭 제>	-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u>1</u>	<u>2</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u>1</u>	<삭 제>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안전연구 관 또는 수석전문관	<신 설>	3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 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삭 제>	-3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신 설>	3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	<삭 제>	-3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신 설>	2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2	<삭 제>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 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신 설>	2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 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	<삭 제>	-2

•	•	•	
•	•	•	
<u>공 업 연 구 관 · 시 설 연 구 관</u> <u>또는 안전연구관</u>	<u><신 설></u>	<u>1</u>	+1
<u>공 업 연 구 사 · 시 설 연 구 사</u> <u>또는 안전연구사</u>	<u><신 설></u>	<u>2</u>	+2
<u>공 업 연 구 관 · 시 설 연 구 관</u> <u>또는 방재안전연구관</u>	<u>1</u>	<u><삭 제></u>	-1
<u>공 업 연 구 사 · 시 설 연 구 사</u> <u>또는 방재안전연구사</u>	<u>2</u>	<u><삭 제></u>	-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u>1</u>	<u>2</u>	+1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